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가. 질산에스테르류
- 나. 니트로화합물
- 다. 니트로소화합물
- 라. 아조화합물
- 마. 디아조화합물
-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 사. 유기과산화물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가. 리튬
- 나. 칼륨·나트륨
- 다. 황
- 라. 황린
- 마. 황화인·적린
- 바. 셀룰로이드류
-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 아. 마그네슘 분말
-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 타. 금속의 수소화물
- 파. 금속의 인화물
-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 아. 질산 및 그 염류
-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 가. 수소
- 나. 아세틸렌
- 다. 에틸렌
- 라. 메탄
- 마. 에탄
- 바. 프로판
- 사. 부탄
- 아. 영 별표 10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 가. 부식성 산류
 -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나. 부식성 염기류
 -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시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시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시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관리감독자의 유해 · 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 (제2편제1장제3절)	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라. 금형의 부착 · 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제2편제1장제4절)	가.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다.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라. 작업 중 지그(jig) 및 공구 등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제2편제1장제9절제2관 · 제3관)	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제2편제2장제1절)	가.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 · 습도 · 차광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나뭇잎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제2편제2장제5절)	가.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 용단 또는 가열작업 (제2편제2장제6절제1관)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그 발생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을 열어 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다.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라.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마. 아세틸렌 용접장치 내의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 바.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사. 발생기를 수리 · 가공 · 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 (제2편제2장제6절제2관)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 있는 유류 · 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다.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라.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 · 취관 · 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 · 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마.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8.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 (제2편제4장제1절제2관·제4장제2절제1관·제4장제2절제3관제1속·제4장제4절)	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9.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飛階)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체작업의 경우 가목은 적용 제외) (제1편제7장제2절)	가.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나.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0. 발파작업 (제2편제4장제2절제2관)	가.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나.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다.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라.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마. 점화신호를 하는 일 바.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사.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湧水)의 유무 및 암석·토사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아.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자.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1.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제2편제4장제2절제5관)	가.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다.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12. 화물취급작업 (제2편제6장제1절)	가.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라.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13.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 (제2편제6장제2절)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다.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일
14.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제2편제3장)	가.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나.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다.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라.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마.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하는 일 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사.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15.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하는 작업 (제3편제1장)	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단,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1) 후드(hood)나 덕트(duct)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다.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라.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제(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 마.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업무
16.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제3편제2장)	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7. 석면 해체·제거작업 (제3편제2장제6절)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8. 고압작업 (제3편제5장)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나.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다.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라.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마.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가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 (1)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 (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 바.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19. 밀폐공간 작업 (제3편제10장)	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 · 플라이휠 · 슬라이드 ·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 ·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3절)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플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제2편제1장제7절)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제2편제1장제9절제2관)	가. 권과방지장치 · 브레이크 ·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9절제3관)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 ·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9절제4관)	가. 방호장치 ·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9절제5관)	가. 방호장치 · 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 · 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 달기체인 · 섬유로프 · 섬유벨트 또는 훅 · 샤클 · 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9절제7관)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 · 후미등 ·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 · 후미등 ·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 · 균열 · 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제2편제1장제10절제5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1절)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 · 회전축 ·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 기계 · 기구를 사용할 때 (제2편제3장제1절)	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제2편제5장)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 · 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제2편제6장제2절)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6장제2절)	가. 혹이 붙어 있는 슬링 · 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 · 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 · 조립 · 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 · 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 · 장비 · 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작업	-	가. 밸브·콧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플랜지(flange)·밸브·콧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 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 섬광·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28조의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된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속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굴착기계의 전락(轉落)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 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응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

강관비계의 종류	조립간격(단위: m)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5	5
틀비계 (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8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 (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
3. 로더 (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 (크래셀, 드래그라인 등)
6. 굴삭기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향타기 및 향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 (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 (버킷준설선, 그레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 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1. 화학설비

- 가. 반응기 · 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 나. 증류탑 · 흡수탑 · 추출탑 · 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 다. 저장탱크 · 계량탱크 · 호퍼 · 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 라. 응축기 · 냉각기 · 가열기 · 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 마.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 바. 캘린더(calender) · 혼합기 · 발포기 · 인쇄기 · 압출기 등 화학 제품 가공설비
- 사. 분쇄기 · 분체분리기 · 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 아. 결정조 · 유동탑 · 탈습기 · 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 자. 펌프류 · 압축기 · 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2.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 가. 배관 · 밸브 · 관 · 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 나. 온도 · 압력 · 유량 등을 지시 · 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 다. 안전밸브 · 안전판 · 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 라.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 관련 설비
- 마. 세정기, 응축기, 벤트스택(bent stack), 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 폐가스처리설비
- 바. 사이클론, 백필터(bag filter), 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 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사위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 · 연구실 · 실험실 ·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위험물질	기준량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 · 니트로글리세린 · 니트로셀룰로오스 등 나.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벤젠 · 트리니트로톨루엔 · 피크린산 등 다. 니트로소 화합물 라. 아조 화합물 마. 디아조 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과초산,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등	1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 · 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 · 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 (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 (리튬 · 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금속화합물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5킬로그램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50킬로그램 10킬로그램 5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1) 차아염소산 (2) 차아염소산칼륨, 그 밖의 차아염소산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1) 아염소산 (2) 아염소산칼륨, 그 밖의 아염소산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1) 염소산 (2) 염소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암모늄, 그 밖의 염소산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1) 과염소산 (2) 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암모늄, 그 밖의 과염소산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브롬산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요오드산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1) 과산화수소 (2)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바륨, 그 밖의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그 밖의 질산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3,000킬로그램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 가솔린 · 아세트알데히드 ·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 이하인 물질 나. 노말헥산 · 아세톤 · 메틸에틸케톤 · 메틸알코올 · 에틸알코올 ·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 아세트산아밀 · 등유 · 경유 · 테레핀유 · 이소아밀알코올 · 아세트산 ·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물질	200리터 400리터 1,000리터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0 에 따른 인화성 가스	50세제곱미터
6. 부식성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 황산 · 질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 아세트산 · 불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7. 급성 독성 물질 가. 시안화수소 · 플루오르아세트산 및 소디움염 · 디옥신 등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인 독성 물질 나.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다. 데카보란 · 디보란 · 포스핀 · 이산화질소 · 메틸이소시아네이트 · 디클로로아세틸렌 · 플루오르아세트아마이드 · 케텐 · 1,4-디클로로-2-부텐 · 메틸비닐케톤 · 벤조트라이클로라이드 · 산화카드뮴 · 규산메틸 · 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 · 디페닐설페이트 등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1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0.5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05mg/ℓ 이하인 독성물질 라. 산화제2수은 · 시안화나트륨 · 시안화칼륨 · 폴리비닐알코올 · 2-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 · 염화제2수은 등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체중) 이상 5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마.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이상 2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바. 황화수소 · 황산 · 질산 · 테트라메틸납 · 디에틸렌트리아민 · 플루오린화 카보닐 · 헥사플루오로아세톤 · 트리플루오르화염소 · 푸르푸릴알코올 · 아닐린 · 불소 · 카보닐플루오라이드 · 발연황산 ·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 디메틸에테르 · 페놀 · 벤질클로라이드 · 포스포러스펜톡사이드 · 벤질디메틸아민 · 피롤리딘 등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100ppm 이상 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0.5mg/ℓ 이상 2.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05mg/ℓ 이상 0.5mg/ℓ 이하인 독성물질 사. 이소프로필아민 · 염화카드뮴 · 산화제2코발트 · 사이클로헥실아민 · 2-아미노피리딘 · 아조다이소부티로니트릴 등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 이상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아. 에틸렌디아민 등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체중) 이상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자. 불화수소 · 산화에틸렌 · 트리에틸아민 · 에틸아크릴산 · 브롬화수소 · 무수아세트산 · 황화불소 · 메틸프로필케톤 · 사이클로헥실아민 등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500ppm 이상 2,500ppm 이하인 독성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2.0mg/ℓ 이상 10mg/ℓ 이하인 독성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5mg/ℓ 이상 1.0mg/ℓ 이하인 독성물질	5킬로그램 5킬로그램 5킬로그램 20킬로그램 20킬로그램 2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비고	
1. 기준량은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2. 기준량 항목의 수치는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3. 2종 이상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기준량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R = \frac{C_1}{T_1} + \frac{C_2}{T_2} + \dots + \frac{C_n}{T_n}$ C_n: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 또는 취급량 T_n: 위험물질 각각의 기준량 4. 위험물질이 둘 이상의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서로 다른 기준량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기준량을 해당 위험물질의 기준량으로 한다. 5. 인화성 가스의 기준량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상태에서의 값으로 한다.	

[별표 10]

강재의 사용기준(제329조 관련)

강재의 종류	인장강도(kg/㎠)	신장률(%)
강관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0 이상
강판, 형강, 평강, 경량형강	34 이상 41 미만	21 이상
	41 이상 50 미만	16 이상
	50 이상 60 미만	12 이상
	60 이상	8 이상
봉강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미만	18 이상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제1항 관련)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 : 1~1 : 1.5
	건지	1 : 0.5~1 : 1
암반	풍화암	1 : 0.8
	연암	1 : 0.5
	경암	1 : 0.3

[별표 12] [개정2012.3.5, 2013.3.21, 2017.3.3]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16종)

- 가. 글루타르알데히드
- 나. 니트로글리세린
- 다. 니트로메탄
- 라. 니트로벤젠
- 마. p-니트로아닐린
- 바. p-니트로클로로벤젠
- 사. 디니트로톨루엔(특별관리물질)
- 아. 디메틸아닐린
- 자. 디메틸아민
-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 카.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 타. 디에탄올아민
- 파. 디에틸렌 트리아민
- 하.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 거. 디에틸아민
- 너. 디에틸 에테르
- 더.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 러. 1,4-디옥산
- 머. 디이소부틸케톤
- 버. 디클로로메탄
- 서. o-디클로로벤젠
- 어. 1,2-디클로로에틸렌
- 저.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 쳐.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 커. 디하이드록시벤젠
- 터.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 퍼.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 허.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고. 메틸 아민
- 노. 메틸 알코올
- 도. 메틸 에틸 케톤
- 로. 메틸 이소부틸 케톤
- 모. 메틸 클로라이드
- 보. 메틸 n-부틸케톤
- 소. 메틸 n-아밀케톤
- 오. o-메틸시클로헥사논
- 조. 메틸시클로헥사놀
- 초. 메틸클로로포름
- 코. 무수 말레인
- 토. 무수프탈산
- 포. 벤젠(특별관리물질)

호. 1,3-부타디엔(특별관리물질)
구. 2-부톡시에탄올
누. n-부틸알코올
두. sec-부틸알코올
루.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무.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부. 브이엠 및 피 나프타
수. 브롬화 메틸
우. 비닐 아세테이트
주. 사염화탄소(특별관리물질)
추. 스톡다드 솔벤트(특별관리물질)
쿠. 스티렌
투. 시클로헥사논
푸. 시클로헥사놀
후. 시클로헥산
그. 시클로헥센
느. 아닐린 및 그 동족체
드. 아세토니트릴
르. 아세톤
므. 아세트알데히드
브. 아크릴로니트릴(특별관리물질)
스. 아크릴아미드(특별관리물질)
으. 알릴글리시딜에테르
즈. 에탄올아민
츠.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트. 에틸렌 글리콜
프. 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흐. 에틸렌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기. 에틸렌이민(특별관리물질)
니. 에틸렌 클로로히드린
디. 에틸벤젠
리. 에틸아민
미. 에틸 아크릴레이트
비. 2,3-에폭사-1-프로판올(특별관리물질)
시. 1,2-에폭시프로판(특별관리물질)
이. 에피클로로히드린(특별관리물질)
지. 요오드화 메틸
치. 이소부틸 알코올
키. 이소아밀 알코올
티. 이소프로필 알코올
피. 이염화에틸렌(특별관리물질)
히. 이황화탄소
가. 초산 메틸
냐. n-초산 부틸

다. 초산 에틸
라. 초산 프로필
마. 초산 이소부틸
바. 초산 이소아밀
샤. 초산 이소프로필
야. 크레졸
자. 크실렌
차. 클로로벤젠
카. 2-클로로-1,3-부타디엔
타.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파. 1,1,2-트리클로로에탄
하. 1,2,3-트리클로로프로판(특별관리물질)
거. 테트라하이드로푸란
녀. 톨루엔
더.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려.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며. 트리에틸아민
버. 트리클로로메탄
셔. 트리클로로에틸렌(특별관리물질)
여. 퍼클로로에틸렌(특별관리물질)
저. 페놀(특별관리물질)
쳐. 페닐글리시딜에테르
커. 포르말데히드(특별관리물질)
터. 프로필렌 이민(특별관리물질)
퍼. 피리딘
허. 하이드라진(특별관리물질)
교.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뇨. n-헥산
도. 헵탄
료. 황산디메틸(특별관리물질)
묘. 가목부터 료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N,N-디메탈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메탈포르아미드(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 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2. 금속류(23종)

가. 구리 및 그 화합물
나. 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라. 망간 및 그 화합물

- 마.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바. 백금 및 그 화합물
 사. 산화마그네슘
 아.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차. 아연 및 그 화합물
 카.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파. 요오드
 하. 은 및 그 화합물
 거. 이산화티타늄
 너. 주석 및 그 화합물
 더.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
 러. 철 및 그 화합물
 머. 오산화바나듐
 버. 카드뮴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서.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어.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특별관리물질)
 저. 텅스텐 및 그 화합물
 처. 가목부터 저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3. 산·알칼리류(17종)

- 가. 개미산
 다. 무수초산
 마. 브롬화수소
 사. 수산화칼륨
 자. 시안화칼륨
 카. 아크릴산
 파. 인산
 거. 초산
 너. 트리클로로아세트산
 더. 황산(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
 러.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 나. 과산화수소
 라. 불화수소
 바. 수산화나트륨
 아. 시안화나트륨
 차. 시안화칼슘
 타. 염화수소
 하. 질산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 가. 불소
 나. 브롬
 다. 산화에틸렌(특별관리물질)

- 라. 삼수소화비소
 마. 시안화수소
 바. 암모니아
 사. 염소
 아. 오존
 자. 이산화질소
 차. 이산화황
 카. 일산화질소
 타. 일산화탄소
 파. 포스겐
 하. 포스핀
 거. 황화수소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형	0.4
	외부식 측방흡인형	0.5
	외부식 하방흡인형	0.5
	외부식 상방흡인형	1.0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	0.7
	외부식 측방흡인형	1.0
	외부식 하방흡인형	1.0
	외부식 상방흡인형	1.2
비고		
1.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흙,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1. B형 간염에 대한 조치사항

근로자의 상태 ¹⁾		노출된 혈액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침		
		HBsAg 양성	HBsAg 음성	검사를 할 수 없거나 혈액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예방접종 ²⁾ 하지 않은 경우		HBIG ³⁾ 1회 투여 및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예방 접종 한 경우	항체형성 HBsAg(+)	치료하지 않음	치료하지 않음	치료하지 않음
	항체미형성 HBsAg(-)	HBIG 2회 투여 ⁴⁾ 또는 HBIG 1회 투여 및 B형간염 백신 재접종	치료하지 않음	고위험 감염원인 경우 HBsAg 양성인 경우와 같이 치료함
	모름	항체(HBsAb) 검사: 1. 적절 ⁵⁾ : 치료하지 않음 2. 부적절: HBIG 1회투여 및 B형 간염 백신 추가접종	치료하지 않음	항체(HBsAg) 검사: 1. 적절: 치료하지 않음 2. 부적절: B형간염백신 추가접종 과 1~2개월후 항체역가검사
비고				
1. 과거 B형간염을 앓았던 사람은 면역이 되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 2. 예방접종은 B형간염 백신을 3회 접종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3. HBIG(B형간염 면역글로블린)는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0.06 ml/kg을 근육주사한다. 4. HBIG 2회 투여는 예방접종을 2회 하였지만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 또는 예방접종을 2회 하지 않았거나 2회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항체가 적절하다는 것은 혈청내 항체(anti HBs)가 10mIU/ml 이상임을 말한다. 6. HBsAg(Hepatitis B Antigen): B형간염 항원				

2.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사항

노출 형태 혈액의 감염상태	침습적 노출		점막 및 피부노출	
	심한 노출 ⁵⁾	가벼운 노출 ⁶⁾	다량 노출 ⁷⁾	소량 노출 ⁸⁾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1급 ¹⁾	확장 3제 예방요법 ⁹⁾		확장 3제 예방요법	기본 2제 예방요법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2급 ²⁾	확장 3제 예방요법	기본 2제 예방요법	기본 2제 예방요법 ¹⁰⁾	
혈액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상태 모름 ³⁾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위험요인이 있으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노출된 혈액을 확인할 수 없음 ⁴⁾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것으로 추정되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음성	예방요법 필요 없음			
비고				

1. 다량의 바이러스(1,500 RNA copies/ml 이상), 감염의 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는 경우이다.
2. 무증상 또는 소량의 바이러스이다.
3. 노출된 혈액이 사망한 사람의 혈액이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검사할 수 없는 경우이다.
4. 폐기한 혈액 또는 주사침 등에 의한 노출로 혈액원(血液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5. 환자의 근육 또는 혈관에 사용한 주사침이나 도구에 혈액이 묻어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6. 파상적 손상이거나 주사침에 혈액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다.
7. 혈액이 뿌러지거나 흘려진 경우 등이다.
8. 혈액이 몇 방울 정도 묻은 경우 등이다.
9. 해당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결정한다.
10. 해당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결정한다.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

감염병	추적관리 내용 및 시기
B형간염 바이러스	HBsAg: 노출 후 3개월, 6개월
C형간염 바이러스	anti HCV RNA: 4~6주 anti HCV: 4~6개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anti HIV: 6주, 12주, 6개월
비고	
1. anti HCV RNA: C형간염바이러스 RNA 검사 2. anti HCV: C형간염항체 검사 3. anti HIV: 인간면역결핍항체 검사	

[별표 16] <개정 2012.3.5>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1. 토석 · 광물 · 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 · 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 · 철거 · 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등을 재단 · 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 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 · 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 ·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 · 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시멘트 · 비산재 · 분말광석 · 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 · 살포 ·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 · 살포 ·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 · 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 · 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는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는 장소에서의 작업
 -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 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燒結)·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연도(煙道) 또는 연돌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제609조 관련)

1.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연삭기·드럼 샌더(drum sander)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제어풍속

분진 작업 장소	제어풍속(미터/초)			
	포위식 후드의 경우	외부식 후드의 경우		
		측방 흡인형	하방 흡인형	상방 흡인형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로 거르는 장소	0.7	-	-	-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0.7	-	-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0.7	1.3	1.3	-
그 밖의 분진작업 장소	0.7	1.0	1.0	1.2
비고				
1.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분진을 빨아들이려는 범위에서 그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				

2.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중 연삭기, 드럼 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설치방법에 따른 제어풍속

후드의 설치방법	제어풍속(미터/초)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	0.5
회전체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 방향을 후드의 개구면으로 덮는 방법	5.0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방법	5.0
비고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을 말한다.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2.3.5〉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2.3.5〉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1. 양식

석 면 함 유	
 	신 호 어 : 발암성물질 유해·위험성 : 폐암, 악성종양증,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체제·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규격

규 격
300cm²(가로×세로)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

1. 양식



2. 규격및 색상

가.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발행처	안전보건공단
발행인	박두용
발행일	2018년 4월 (3차 개정판)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전 화	052)703-0500
총괄기획	교육미디어실
홈페이지	www.kosha.or.kr

2018-교육미디어-196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하시려면 우리 공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세요

미디어 홈페이지(<http://media.kosha.or.kr>)에서 다음과 같이 미디어를 신청해서 받아보세요

1 자료 찾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미디어를 찾아보세요

2 자료 담기 선택

선택한 미디어의 '자료담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완료'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3 담은 자료 표시

페이지 우측에 선택했던 자료를 한번에 볼수있는 '담은자료 보기' 배너가 생성됩니다.

4 담은 자료 상세보기

배너 하단에 '담은자료 보기'를 클릭하시면 고른 미디어의 취소와 선택이 가능하며 배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디어 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 ▶ 고객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 번호, 사업장 관리번호(산재보험) 등을 입력하여 배송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배송 수량을 제한 합니다.

많은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코자 부득이하게 사업장별 배송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종별 30부, 사업장에서는 월 최대 90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전산시스템에서 사업장별 누적 부수가 확인되어 초과 신청시 배송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 ▶ 미디어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제한 부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배송 비용은 신청 사업장에서 부담(착불)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고려하여 미디어 배송 비용은 신청 사업장에서 부담(착불)하고 있습니다.

- ▶ 택배 1박스 : 최대 30부 포장, 배송비 3,000원 (30부 단위로 1박스에 해당하는 배송비 추가 부과)
ex) 90부 신청 : 3박스, 배송비 9,000원 부과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Version.3.0

위기탈출 안전보건

"재해속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군!"

"내가 찾는 안전보건자료가 여기 있었네~!"

"외국인 근로자와 대화해볼까?"



사고포착

실시간 산업재해 속보 제공

응급조치

산업현장 및 일상생활
응급상황 대처법 제공

건강증진

나의 건강수준 평가, 종량률 취급방법
건강증진센터 안내

안전점검

기계기구 및 작업별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다국어회화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13개국 1300개 문장 제공

안전보건 미디어

재해사례, 전자책, 동영상 등
안전보건 자료 제공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조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및
교육기관 안내

바이오리듬

개인 바이오리듬 제공

안전날씨

날씨 변화에 따른
산재 위험지수 등 실시간 제공

MSDS 요약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요약정보



**안전보건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을 다운받으세요**

〈다운로드 방법〉

방법1) 좌측의 QR코드를 QR코드 리더기로 스캔 후 설치

방법2) 구글 Play스토어(Android), 앱스토어(iOS)에서
"안전보건공단" 검색 후 설치

고객님의 소중한 평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래 설문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x. 052-703-0322

본 자료가 여러분의 재해예방활동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귀하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경영층 안전보건 관리자 관리 감독자 근로자 기타

본 자료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디자인·편집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내용 구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반적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업종

- 제조업
- 건설업
- 전기·가스·수도업
- 운수·창고·통신업
- 임업·농업·어업
- 기타산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건물종합관리업
- 음식 및 숙박업
- 도·소매업 및 수리업
- 교육·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규모

- 5인 미만
- 50~99인
- 300인 이상
- 5~49인
- 100~299인

소중한 의견을 당첨의 기쁨으로 돌려드립니다!

경품추첨

1회차 2018년 7월 첫째주
'18년. 6. 22. 이전 도착 분

2회차 2018년 12월 첫째주
'18년. 11. 23. 이전 도착 분

* 경품 내용과 추첨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경품 추첨일 이후 SNS로 개별통보 됩니다
(알람 받기를 원하시면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이 름	전 화
회 사 명	
회사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② 수집 · 이용 개인정보 항목

이름, 전화번호, 회사명, 회사주소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당해연도 (경과 시 일괄폐기)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다 ☐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셔야 경품증정 등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